

울산지방법원 2022. 8. 18 선고 2022나10347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재판경과

울산지방법원 2022. 8. 18 선고 2022나10347 판결

울산지방법원 2021. 12. 17 선고 2021가단2263 판결

전 문

원고, 피항소인A

피고, 항소인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고을

담당변호사 김석환

변론 종결 2022. 7. 7.

판결 선고 2022. 8. 18.

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21. 12. 17. 선고 2021가단2263 판결

주 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02,532,077원 및 이에 대하여 2020. 9. 24.부터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추가하는 부분

○ 제1심판결 6쪽 9행 마지막에 "(대법원 2012. 5. 10. 선고 2012다4633 판결 등 참고)"를 부가한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,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판사김용희

판사이정목

판사박주연

별지